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71
----------	-------

제출년월일 : 2021.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법령에 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또한 성별영향평가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외부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부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규정 마련(안 제10조제2항제1호)
- 나. 이의신청 등 규정 삭제(안 제14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1. 5. 20. ~ 6. 9.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외부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규정 마련)
- 6)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2021.6.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후단에 “이 경우 구청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를 신설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② (생 략) 1. 외부위원 : 지역주민 대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u><신 설></u>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② (현행과 같음) 1. 외부위원 : 지역주민 대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u>이 경우 구청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u>
<u>제14조(이의신청 등) ① 제13조에 따라 통보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u>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u>	<u>제14조 <삭 제></u>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도시환경국 건축과 황철현 (☎ 3153-9443)